

# 학교법인 건양학원 이사회 회의록

(제 2017 - 6차)

이사정수	8 인	재적이사수	8 인
감사정수	2 인	재적감사수	2 인

1. 일 시 : 2017. 10. 23(월) 11:30 ~ 12:30 (회의소집 통보일 : 2017. 10. 13)

2. 장 소 : 건양대학교병원 본관 11층 대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임원

- 이사(7인) : 구본정, 김천중, 김희수, 김영이, 조신행, 김중현, 유제협
- 감사(1인) : 박성환

○ 불참임원

- 이사(1인) : 서창적
- 감사(1인) : 윤영진

4. 안 건

○ 제1의안 : 기본재산 변동(안)

○ 제2의안 : 정관 변경(안)

○ 기타의안 및 보고사항

5. 회의내용

○ 이 사 장 : 재적이사 8분 중 7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다고 하시며 2017학년도 제6차 이사회의 개회를 선언하시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하시며,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임원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다. 그리고 2017학년도 제5차 이사회의 결과보고 후 채택의안에 대해 심의·의결 하겠다고 하시며 제시된 안건 이외에 추가안건이 있으신지 임원들께 물으시다.

○ 전 체 이 사 : 추가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시다.

○ 이 사 장 : 전체이사의 찬성으로 제시된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채택하겠다고 말씀하시며. 2017학년도 제5차 이사회의 결과보고를 듣겠다고 하시며 부국장에게 설명토록 하시다.

○ 부 국 장 : 지난 이사회에서 제1의안으로 상정되었던 건양대학교 총장 임용(안)은 2017.9.8. 인사발령 및 2017.9.14. 임용보고를 완료 하였으며, 제2안으로 상정되었던 정관 변경(안)은 2017.9.18.에 관할청 보고 및

이사장	구본정	이사	김영이	이사	김천중
-----	-----	----	-----	----	-----

2017.9.27. 회신 일부시정요구 및 대학 알리미에 공시 하였다고 보고 드리다.

- 이 사 장 : 지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추진결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지 물으시다.
- 전 체 이 사 : 의문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다.
- 이 사 장 : 전체 임원께서 의문사항이 없다고 하시니, 안건심의로 넘어가겠다고 하시며 제1의안 기본재산 변동(안) 건양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매입(안)을 상정하시고 부국장에게 설명토록 하시다.
- 부 국 장 : 정관 제2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건양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부속시설을 매입하고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고 설명 드리다.

#### 건양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매입(안)

구 분	내 용
주 소	대전 서구 도안동로 183 현대아이파크 1508동 1304호
구 조	철근콘크리트 (집합건물)
건축년도 / 전유면적	2013년 / 84.95m <sup>2</sup>
매입금액	455,000천 원
재 원	교비회계
매 도 자	박지양, 강계숙 (공동명의)
제한물권설정여부	없음 (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압류 등)

- 이 사 장 : 부국장 설명 내용과 회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의견을 달라고 말씀 하시다.
- 김중현이사 : 제한물건 설정여부에 대하여 물으시다.
- 부 국 장 : 재산 매입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제한물건 설정여부(저당권,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압류 등), 점유사실 여부에 대하여 확인 검토 완료 하였다고 보고 드리다.
- 유제협이사 : 재청하시다.
- 조신행이사 : 동의하시다.
- 전 체 이 사 : 참석이사 전원이 원안 의결에 찬성의사를 표명하시다.

이사장	이 본정	이사	김영이	이사	김천중
-----	------	----	-----	----	-----

- 이 사 장 : 의견수렴 후 전체이사의 찬성으로 제1의안 기본재산 변동(안) 건양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매입(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시다. 이어서 제2의안 정관변경(안)을 부국장에게 설명토록 하시다.
- 부 국 장 : 지난 제5차 이사회의 정관변경(안)을 심의·의결하여 관할청에 변경 보고 하였으나, 관할청으로부터 일부 시정요구를 받아 이에 따라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함을 설명 드리다.

### 정관 변경 신·구문 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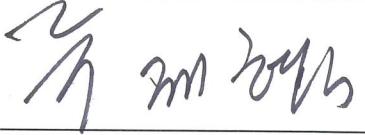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u>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삭제)</u>	단서 조항 삭제
	부칙 (시행일) 이 개정 정관은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조신행이사 : 관할청 시정 요구사항으로 정관 변경하는 것으로 안건 대하여 동의 하신다고 말씀하시다.
- 김영이이사 : 재청하시다.
- 김중현이사 : 동의하시다.
- 전체 이사 : 원안 의결에 찬성의사를 표명하시다.
- 이 사 장 : 의견수렴 후 전체이사의 찬성으로 제2의안 정관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시다. 이어서 채택된 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다고 하시며 회의록에 간 서명을 하실 분에 대해 임원들의 의견을 물으시다.
- 유제협이사 : 회의록 간서명은 이사장과 김천중 이사, 김영이 이사께서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다.
- 전체 이사 :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의사를 표명하시다.
- 이 사 장 : 전체이사의 의견에 따라 회의록의 간서명은 이사장인 저와 김천중 이사, 김영이 이사가 대표로 하겠다고 하시며, 회의에 참여해 주신 임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17학년도 제6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 하시다.

이사장	김영이	이사	김영이	이사	김천중
-----	-----	----	-----	----	-----

의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에 참석이사들이 각각 기명 날인하다.

2017. 10. 23.

이사장	3월정	이사	김천중
이사	김희수	이사	
이사	김은경	이사	
이사	김영이	이사	
감사	이성한	감사	